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7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3명” 을 “67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명” 을 “1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 직급별<br>기관별 | 총계  | 본청 | 의 회<br>사무과 | 직속기관 |            | 읍·면 |
|------------|-----|----|------------|------|------------|-----|
|            |     |    |            | 보건소  | 농업<br>기술센터 |     |
| 총 계        | 676 |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일반직 계      | 646 |    |            |      |            |     |
| 4급         | 4   | 3  |            | 1    |            |     |
| 4~5급       | 1   | 1  |            |      |            |     |
| 5급         | 34  | 14 | 3          | 2    | 5          | 10  |
| 6급이하 소계    | 606 |    |            |      |            |     |
| 전문경력관      | 1   |    |            |      |            |     |
| 별정직        | 1   |    |            |      |            |     |
| 기록연구사      | 1   |    |            |      |            |     |
| 농촌지도사      | 27  |    |            |      |            |     |

남해군 조례 제2576호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가 천” 을 “다랭이” 로 한다.

| 읍면별 | 법정리별 | 행정리별 | 반 수 | 반 명 | 구 역 | 비 고 |
|-----|------|------|-----|-----|-----|-----|
| 남면  | 홍 현  | 홍 현1 | 3   | 1-3 | 일원  |     |
|     |      | 무지개  | 2   | 1-2 | ”   |     |
|     |      | 다랭이  | 2   | 1-2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7호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리의 관할구역란 중 “가천” 을 “다랭이” 로 한다.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할구역          |
|-----|-----|----|---------------|
| 남면  | 홍현리 | 3  | 홍현1, 무지개, 다랭이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8호

##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속기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남해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79호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민”을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단서 중 “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으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제17조(군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군수는 군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19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9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23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0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 마을회관과 그 일단의 구역 안에 있으면서 마을회관의” 를  
“제1호 마을회관의”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2억5천만원 이하” 를 “3억원 이하”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1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 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되,” 로 한다.

별표 6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 근거법조문           | 과태료   |
|--|-----------------|---|
|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br>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br>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br>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br>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br>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582호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3항에 따른”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한다.

제6조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전담인력)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 점검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화장실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3호

##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서울농장 체험료**(제7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
| 체 험 료 | 1인 1일 | 100,000원 이하 | 숙박포함 |



남해군 조례 제2584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 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5호

##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            |                        |      |
|------------|------------------------|------|
| 교 육<br>대상자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영업장 소재지                |      |
| 교육일시       | 년      월      일      시 |      |
| 교육장소       |                        |      |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업무담당자 연락처 :

#### 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

제 호

|             |     |
|-------------|-----|
| 교육<br>과정명   |     |
| 교 육<br>수료일자 |     |
| 교육대상자       | 성명  |
|             | 업소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 면 제 신청서  
[ ] 유 예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          |
|-----|---------|----------|
| 신청자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성별 남 / 여 |
|     | 업소명     | 연락처      |

|    |           |
|----|-----------|
| 교육 | 면제 유예기간   |
|    | 면제 · 유예사유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구분 | 대상자(해당란에 √ 표시)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
|----|-------------------------------|----------------------------|--------------|--------|
| 유예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본인의 질병·사고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 [ ]국외출장                       | 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 [ ]세무서 휴업신고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 [ ]기타                         |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면제 | [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있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남해군 조례 제2586호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 을 “에 사업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최근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 을 “사업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7호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8호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89호

##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해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건본주택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90호

##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시속 25킬로미터) 점검
3.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1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     |        |           |      |        |    |     |
|-----------------|-----|-----|--------|-----------|------|--------|----|-----|
|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     |     |        |           |      |        |    |     |
| 직렬              |     | 총계  | 본청     | 의회<br>사무과 | 직속기관 |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     |
| 총계              | 합 계 | 676 | 354(2) | 16        | 74   | 68     | 20 | 144 |
|                 | 정무직 | 1   | 1      |           |      |        |    |     |
|                 | 일반직 | 646 | 351(2) | 16        | 74   | 41     | 20 | 144 |
|                 | 별정직 | 1   | 1      |           |      |        |    |     |
|                 | 연구직 | 1   | 1      |           |      |        |    |     |
|                 | 지도직 | 27  |        |           |      | 27     |    |     |
| 정무직계            |     | 1   | 1      |           |      |        |    |     |
| 일반직계            |     | 646 | 351(2) | 16        | 74   | 41     | 20 | 144 |
| 4급 합계           |     | 4   | 3      |           | 1    |        |    |     |
| 서기관             |     | 1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     | 2   | 2      |           |      |        |    |     |
| 기술서기관           |     | 1   |        |           | 1    |        |    |     |
| 4~5급 합계         |     | 1   | 1      |           |      |        |    |     |
| 서기관·행정사무관       |     | 1   | 1      |           |      |        |    |     |
| 5급 합계           |     | 34  | 14     | 3         | 2    | 5      | 1  | 9   |
| 행정              |     | 4   | 3      | 1         |      |        |    |     |
| 행정·사회복지         |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         |     | 2   | 1      |           |      |        |    | 1   |
| 행정·시설           |     | 6   | 6      |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 1   |        |           |      |        |    | 1   |
| 행정·농업·시설        |     | 1   |        |           |      |        |    | 1   |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 3   |        |           |      |        | 1  | 2   |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     | 1   |        | 1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     | 1   |        | 1         |      |        |    |     |
| 행정·시설·해양수산·보건   |     | 1   |        |           |      |        |    | 1   |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     | 1   |        |           |      |        |    | 1   |
| 행정·농지·시설        |     | 2   |        |           |      |        |    | 2   |
| 행정·사회복지·시설      |     | 2   | 2      |           |      |        |    |     |
| 행정·환경·시설        |     | 1   | 1      |           |      |        |    |     |
| 농업·농촌지도         |     | 1   |        |           |      | 1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     | 2   |        |           |      | 2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     | 1   |        |           |      | 1      |    |     |
| 행정·농업·농지·농촌지도   |     | 1   |        |           |      | 1      |    |     |
|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     | 1   |        |           | 1    |        |    |     |

|                 |     |    |   |    |    |   |    |
|-----------------|-----|----|---|----|----|---|----|
|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 1   |    |   | 1  |    |   |    |
| 6급 합계           | 166 | 90 | 5 | 12 | 17 | 5 | 37 |
| 행정              | 23  | 18 | 4 |    |    | 1 |    |
| 세무              | 1   | 1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보건진료            | 3   |    |   | 3  |    |   |    |
| 시설              | 5   | 5  |   |    |    |   |    |
| 행정·전산           | 1   | 1  |   |    |    |   |    |
| 행정·세무           | 4   | 4  |   |    |    |   |    |
| 행정·사회복지         | 7   | 7  |   |    |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전산      | 7   |    |   |    |    |   | 7  |
| 행정·세무·사회복지      | 1   |    |   |    |    | 1 |    |
| 행정·농업           | 11  | 2  |   |    |    |   | 9  |
| 행정·농업·공업        | 2   | 2  |   |    |    |   |    |
| 행정·농업·공업·녹지     | 2   | 2  |   |    |    |   |    |
| 행정·녹지           | 1   |    |   |    |    |   | 1  |
| 행정·해양수산         | 4   | 4  |   |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 1   |    |   | 1  |    |   |    |
|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 2   |    |   | 2  |    |   |    |
| 행정·보건·환경·농업     | 1   | 1  |   |    |    |   |    |
| 행정·보건·환경·공업     | 1   | 1  |   |    |    |   |    |
| 행정·시설           | 22  | 21 |   |    |    |   | 1  |
| 보건·간호·의료기술      | 6   |    |   | 6  |    |   |    |
| 행정·농업·수의        | 1   |    |   |    | 1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 1   |    |   |    | 1  |   |    |
| 농업·녹지           | 1   |    |   |    | 1  |   |    |
| 농업·농촌지도         | 4   |    |   |    | 4  |   |    |
| 행정·세무·농업        | 3   |    |   |    |    | 1 | 2  |
| 행정·세무·농업·보건     | 1   |    |   |    |    |   | 1  |
|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 1   |    |   |    |    |   | 1  |
|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 1   |    |   |    |    |   | 1  |
| 행정·사회복지·보건      | 6   | 2  |   |    |    |   | 4  |
| 행정·사회복지·농업      | 1   |    |   |    |    |   | 1  |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 1   |    |   |    |    | 1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농업·녹지        | 4   |    |   |    | 4  |   |    |
| 행정·환경           | 4   | 4  |   |    |    |   |    |
| 행정·농업·시설        | 9   | 4  |   |    |    |   | 5  |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 1   |    |   |    |    |   | 1  |

|               |     |     |   |    |   |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 5   |     |   |    | 5 |   |    |
| 농업·공업·농촌지도    | 1   |     |   |    | 1 |   |    |
| 행정·녹지·시설      | 1   |     |   |    |   |   | 1  |
| 행정·환경·시설      | 1   | 1   |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2   |     |   |    |   |   | 2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 1   |     |   |    |   | 1 |    |
| 운전            | 2   | 1   | 1 |    |   |   |    |
| 통신운영          | 1   | 1   |   |    |   |   |    |
| 전기운영·기계운영     | 1   | 1   |   |    |   |   |    |
| 7급 합계         | 198 | 106 | 4 | 35 | 8 | 8 | 37 |
| 행정            | 34  | 22  | 4 |    |   | 2 | 6  |
| 세무            | 6   | 2   |   |    |   | 1 | 3  |
| 사회복지          | 11  | 4   |   |    |   | 1 | 6  |
| 전산            | 1   | 1   |   |    |   |   |    |
| 공업            | 5   | 4   |   |    |   |   | 1  |
| 해양수산          | 7   | 7   |   |    |   |   |    |
| 보건            | 12  |     |   | 12 |   |   |    |
| 의료기술          | 3   |     |   | 3  |   |   |    |
| 간호            | 7   |     |   | 7  |   |   |    |
| 보건진료          | 9   |     |   | 9  |   |   |    |
| 환경            | 1   | 1   |   |    |   |   |    |
| 시설            | 9   | 8   |   |    |   | 1 |    |
| 행정·세무·전산      | 2   | 2   |   |    |   |   |    |
| 행정·세무·농업      | 4   | 1   |   |    |   |   | 3  |
| 행정·전산·농업      | 1   |     |   |    |   |   | 1  |
| 행정·사회복지       | 18  | 8   |   |    |   | 2 | 8  |
| 행정·농업         | 9   | 1   |   |    | 3 |   | 5  |
| 행정·농업·녹지      | 7   | 2   |   |    | 3 |   | 2  |
| 행정·농업·수의      | 1   |     |   |    |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 2   |     |   | 2  |   |   |    |
| 행정·환경         | 3   | 3   |   |    |   |   |    |
| 행정·시설         | 22  | 22  |   |    |   |   |    |
| 세무·전산         | 1   | 1   |   |    |   |   |    |
| 행정·시설·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2   | 2   |   |    |   |   |    |
| 농업·시설         | 2   | 1   |   |    |   |   | 1  |
| 보건·간호         | 1   |     |   | 1  |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 1   |     |   | 1  |   |   |    |
| 보건·환경         | 1   | 1   |   |    |   |   |    |

|               |     |    |   |    |   |   |    |
|---------------|-----|----|---|----|---|---|----|
| 행정·환경·시설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1   | 1  |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녹지·시설      | 1   | 1  |   |    |   |   |    |
| 행정·세무·농업·시설   | 3   | 1  |   |    |   | 1 | 1  |
| 운전            | 6   | 6  |   |    |   |   |    |
| 전기운영·기계운영     | 1   |    |   |    | 1 |   |    |
| 녹지            | 1   | 1  |   |    |   |   |    |
| 8급 합계         | 173 | 99 | 3 | 21 | 6 | 4 | 40 |
| 행정            | 31  | 24 | 1 |    |   | 1 | 5  |
| 세무            | 4   | 3  |   |    |   |   | 1  |
| 사회복지          | 16  | 8  |   |    |   | 1 | 7  |
| 전산            | 1   | 1  |   |    |   |   |    |
| 농업            | 3   |    |   |    | 3 |   |    |
| 녹지            | 2   | 1  |   |    | 1 |   |    |
| 해양수산          | 5   | 5  |   |    |   |   |    |
| 환경            | 1   | 1  |   |    |   |   |    |
| 보건·세무         | 1   | 1  |   |    |   |   |    |
| 의료기술          | 6   |    |   | 6  |   |   |    |
| 보건진료          | 6   |    |   | 6  |   |   |    |
| 시설            | 11  | 7  |   |    |   |   | 4  |
| 방재안전          | 1   | 1  |   |    |   |   |    |
| 행정·세무         | 5   | 2  |   |    |   |   | 3  |
| 행정·사회복지       | 12  | 3  |   |    |   | 1 | 8  |
| 행정·농업·시설      | 14  | 3  |   |    | 1 | 1 | 9  |
| 행정·전산         | 2   | 2  |   |    |   |   |    |
| 행정·해양수산·전산    | 1   | 1  |   |    |   |   |    |
| 행정·전산·사서      | 1   | 1  |   |    |   |   |    |
| 행정·환경         | 4   | 3  |   |    |   |   | 1  |
| 행정·시설         | 12  | 12 |   |    |   |   |    |
| 행정·시설·공업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1   | 1  |   |    |   |   |    |
| 농업·녹지         | 1   |    |   |    | 1 |   |    |
| 전산·방송통신       | 3   | 3  |   |    |   |   |    |
| 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보건·간호         | 8   |    |   | 8  |   |   |    |
| 행정·보건·환경      | 3   | 3  |   |    |   |   |    |
| 운전            | 7   | 6  |   | 1  |   |   |    |
| 숙기            | 2   |    | 2 |    |   |   |    |
| 공업            | 7   | 5  |   |    |   |   | 2  |

|             |    |       |   |   |    |   |    |
|-------------|----|-------|---|---|----|---|----|
| 9급 합계       | 69 | 38(2) | 1 | 3 | 4  | 2 | 21 |
| 행정          | 20 | 13(2) | 1 |   |    |   | 6  |
| 세무          | 4  | 2     |   |   |    |   | 2  |
| 사회복지        | 7  | 2     |   |   |    | 1 | 4  |
| 농업          | 1  |       |   |   | 1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환경          | 3  | 3     |   |   |    |   |    |
| 시설          | 5  | 2     |   |   |    |   | 3  |
| 방재안전        | 1  | 1     |   |   |    |   |    |
| 의료기술        | 1  |       |   | 1 |    |   |    |
| 행정·시설       | 8  | 8     |   |   |    |   |    |
| 행정·세무·전산    | 2  | 1     |   |   |    |   | 1  |
| 행정·사회복지     | 3  | 2     |   |   |    |   | 1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행정·농업·녹지·공업 | 6  | 1     |   |   | 2  |   | 3  |
| 행정·전산·보건    | 1  |       |   | 1 |    |   |    |
| 운전          | 2  |       |   | 1 | 1  |   |    |
| 사무운영        | 2  |       |   |   |    | 1 | 1  |
| 농기계교관       | 1  |       |   |   | 1  |   |    |
| 일반비서        | 1  | 1     |   |   |    |   |    |
| 기록연구        | 1  | 1     |   |   |    |   |    |
| 농촌지도        | 27 |       |   |   | 27 |   |    |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85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이 폐기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현황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수 : 322점(창선면, 삼동면 일원)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보

(60) 제 708 호

2021년 12월 13일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1  | 도근점 | 9001 | 지역   | 151643.75 | 292440.15 | 창선면 상죽리 291-2  | 폐기   | 2021.12.03. |
| 2  | 도근점 | 9002 | 지역   | 151566.32 | 292507.91 | 창선면 상죽리 91-2   | 폐기   | 2021.12.03. |
| 3  | 도근점 | 9003 | 지역   | 151532.04 | 292444.41 | 창선면 상죽리 276-1  | 폐기   | 2021.12.03. |
| 4  | 도근점 | 9004 | 지역   | 151512.49 | 292418.75 | 창선면 상죽리 275    | 폐기   | 2021.12.03. |
| 5  | 도근점 | 9005 | 지역   | 151505.46 | 292390.07 | 창선면 상죽리 268    | 폐기   | 2021.12.03. |
| 6  | 도근점 | 9006 | 지역   | 151463.62 | 292431.36 | 창선면 수산리 155-4  | 폐기   | 2021.12.03. |
| 7  | 도근점 | 9007 | 지역   | 151459.94 | 292455.69 | 창선면 상죽리 153-5  | 폐기   | 2021.12.03. |
| 8  | 도근점 | 9017 | 지역   | 151246.61 | 292686.91 | 창선면 수산리253     | 폐기   | 2021.12.03. |
| 9  | 도근점 | 9018 | 지역   | 151258.08 | 292698    | 창선면 수산리263     | 폐기   | 2021.12.03. |
| 10 | 도근점 | 9019 | 지역   | 151316.76 | 292595.32 | 창선면 수산리196-2   | 폐기   | 2021.12.03. |
| 11 | 도근점 | 9020 | 지역   | 151226.98 | 292596.76 | 창선면 수산리222-2   | 폐기   | 2021.12.03. |
| 12 | 도근점 | 9022 | 지역   | 151182.38 | 292640.79 | 창선면 수산리 223-2  | 폐기   | 2021.12.03. |
| 13 | 도근점 | 9024 | 지역   | 150962.49 | 292579.69 | 창선면 수산리453     | 폐기   | 2021.12.03. |
| 14 | 도근점 | 9026 | 지역   | 151462.04 | 292389.96 | 창선면 상죽리163-5   | 폐기   | 2021.12.03. |
| 15 | 도근점 | 9027 | 지역   | 153614.33 | 289874.49 | 창선면 서대리802-2   | 폐기   | 2021.12.03. |
| 16 | 도근점 | 9029 | 지역   | 153675.74 | 289806.62 | 창선면 서대리801-10  | 폐기   | 2021.12.03. |
| 17 | 도근점 | 9032 | 지역   | 153643.32 | 289505.19 | 창선면 서대리 764-4  | 폐기   | 2021.12.03. |
| 18 | 도근점 | 9034 | 지역   | 153722.97 | 289868.37 | 창선면 서대리 800-6  | 폐기   | 2021.12.03. |
| 19 | 도근점 | 9035 | 지역   | 153803.88 | 289838.74 | 창선면 서대리 800-6  | 폐기   | 2021.12.03. |
| 20 | 도근점 | 9036 | 지역   | 153865.66 | 289763.53 | 창선면 서대리 760-3  | 폐기   | 2021.12.03. |
| 21 | 도근점 | 9037 | 지역   | 153946.67 | 289720.85 | 창선면 서대리 760-1  | 폐기   | 2021.12.03. |
| 22 | 도근점 | 9039 | 지역   | 154058.53 | 289592.52 | 창선면 서대리 759-3  | 폐기   | 2021.12.03. |
| 23 | 도근점 | 9040 | 지역   | 154044.69 | 289508.74 | 창선면 서대리 761-2  | 폐기   | 2021.12.03. |
| 24 | 도근점 | 9042 | 지역   | 153912.56 | 289344.97 | 창선면 서대리 763-1  | 폐기   | 2021.12.03. |
| 25 | 도근점 | 9043 | 지역   | 153843.18 | 289296.07 | 창선면 서대리 763-2  | 폐기   | 2021.12.03. |
| 26 | 도근점 | 9044 | 지역   | 153744.09 | 289183.87 | 창선면 서대리 766-1  | 폐기   | 2021.12.03. |
| 27 | 도근점 | 9045 | 지역   | 153916.98 | 289645.56 | 창선면 서대리761-12  | 폐기   | 2021.12.03. |
| 28 | 도근점 | 9049 | 지역   | 153827.46 | 289441.32 | 창선면 서대리763-8   | 폐기   | 2021.12.03. |
| 29 | 도근점 | 9062 | 지역   | 152312.31 | 294997.04 | 창선면 오용리 1127   | 폐기   | 2021.12.03. |
| 30 | 도근점 | 9147 | 지역   | 151539.93 | 293916.68 | 창선면 오용리 1212   | 폐기   | 2021.12.03. |
| 31 | 도근점 | 9148 | 지역   | 151448.75 | 293968.51 | 창선면 오용리 1212   | 폐기   | 2021.12.03. |
| 32 | 도근점 | 9149 | 지역   | 151329.63 | 294014.03 | 창선면 오용리 1213   | 폐기   | 2021.12.03. |
| 33 | 도근점 | 9150 | 지역   | 151190.36 | 294069.83 | 창선면 부윤리 265    | 폐기   | 2021.12.03. |
| 34 | 도근점 | 9155 | 지역   | 151226.45 | 293956.18 | 창선면 오용리 1339   | 폐기   | 2021.12.03. |
| 35 | 도근점 | 9158 | 지역   | 151521.05 | 293765    | 창선면 오용리 1289   | 폐기   | 2021.12.03. |
| 36 | 도근점 | 9159 | 지역   | 151636.62 | 293752.19 | 창선면 오용리 1289   | 폐기   | 2021.12.03. |
| 37 | 도근점 | 9161 | 지역   | 155290.34 | 292347.17 | 창선면 당항리 산126-1 | 폐기   | 2021.12.03. |
| 38 | 도근점 | 9162 | 지역   | 155377.98 | 292205.58 | 창선면 당항리 707-1  | 폐기   | 2021.12.03. |
| 39 | 도근점 | 9163 | 지역   | 155405.77 | 292131.51 | 창선면 당항리707-3   | 폐기   | 2021.12.03. |
| 40 | 도근점 | 9166 | 지역   | 155600.64 | 291648.46 | 창선면 울도리 60-2   | 폐기   | 2021.12.03. |
| 41 | 도근점 | 9167 | 지역   | 155619.22 | 291565.74 | 창선면 울도리 904    | 폐기   | 2021.12.03. |
| 42 | 도근점 | 9170 | 지역   | 156063.63 | 290819.77 | 창선면 울도리 481-5  | 폐기   | 2021.12.03. |
| 43 | 도근점 | 9171 | 지역   | 150697.16 | 290725.31 | 창선면 울도리 503-3  | 폐기   | 2021.12.03. |
| 44 | 도근점 | 9172 | 지역   | 156323.64 | 290590.02 | 창선면 울도리 455    | 폐기   | 2021.12.03. |
| 45 | 도근점 | 9174 | 지역   | 156512.16 | 290741.17 | 창선면 울도리 산60-6  | 폐기   | 2021.12.03. |
| 46 | 도근점 | 9175 | 지역   | 156647.14 | 291171.3  | 창선면 울도리 산60-6  | 폐기   | 2021.12.03. |
| 47 | 도근점 | 9176 | 지역   | 157452.58 | 291616.44 | 창선면 대벽리 801-5  | 폐기   | 2021.12.03. |
| 48 | 도근점 | 9178 | 지역   | 157655.79 | 292107.59 | 창선면 대벽리 산153-4 | 폐기   | 2021.12.03. |
| 49 | 도근점 | 9206 | 지역   | 150566.84 | 291736.86 | 창선면 옥천리 44     | 폐기   | 2021.12.03. |
| 50 | 도근점 | 9208 | 지역   | 150501.87 | 291462.74 | 창선면 옥천리323     | 폐기   | 2021.12.03. |
| 51 | 도근점 | 9211 | 지역   | 150295.65 | 291110.54 | 창선면 옥천리 356-2  | 폐기   | 2021.12.03. |
| 52 | 도근점 | 9212 | 지역   | 150250.31 | 291040.03 | 창선면 옥천리 238-2  | 폐기   | 2021.12.03. |
| 53 | 도근점 | 9214 | 지역   | 149992.98 | 290960.85 | 창선면 옥천리190-2   | 폐기   | 2021.12.03. |
| 54 | 도근점 | 9215 | 지역   | 149851.96 | 291035.37 | 창선면 옥천리106     | 폐기   | 2021.12.03. |
| 55 | 도근점 | 9216 | 지역   | 149743.74 | 291079.69 | 창선면 옥천리109     | 폐기   | 2021.12.03. |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56  | 도근점 | 9218 | 지역   | 149507    | 291071.9  | 창선면 지족리 216     | 폐기   | 2021.12.03. |
| 57  | 도근점 | 9220 | 지역   | 149465.39 | 289723.4  | 창선면 지족리 540-4   | 폐기   | 2021.12.03. |
| 58  | 도근점 | 9221 | 지역   | 149242.24 | 290080.48 | 창선면 지족리 475-2   | 폐기   | 2021.12.03. |
| 59  | 도근점 | 9222 | 지역   | 149240.17 | 290570.12 | 창선면 지족리 361-1   | 폐기   | 2021.12.03. |
| 60  | 도근점 | 9227 | 지역   | 149135.89 | 291211.6  | 창선면 지족리 309-9   | 폐기   | 2021.12.03. |
| 61  | 도근점 | 9231 | 지역   | 155096.65 | 289983.75 | 창선면 울도리 산187-5  | 폐기   | 2021.12.03. |
| 62  | 도근점 | 9232 | 지역   | 154651.3  | 289889.63 | 창선면 서대리 471-5   | 폐기   | 2021.12.03. |
| 63  | 도근점 | 9233 | 지역   | 154526.8  | 289814.52 | 창선면 서대리 509-6   | 폐기   | 2021.12.03. |
| 64  | 도근점 | 9234 | 지역   | 154577.68 | 289431.18 | 창선면 서대리 516-12  | 폐기   | 2021.12.03. |
| 65  | 도근점 | 9235 | 지역   | 154375.12 | 289638.88 | 창선면 서대리 527-5   | 폐기   | 2021.12.03. |
| 66  | 도근점 | 9236 | 지역   | 154278.68 | 289562.34 | 창선면 서대리 산32-2   | 폐기   | 2021.12.03. |
| 67  | 도근점 | 9237 | 지역   | 154164.71 | 289577.69 | 창선면 서대리 산37-2   | 폐기   | 2021.12.03. |
| 68  | 도근점 | 9238 | 지역   | 154052.8  | 289651.62 | 창선면 서대리 1276    | 폐기   | 2021.12.03. |
| 69  | 도근점 | 9239 | 지역   | 153896.63 | 289777.89 | 창선면 서대리 593-1   | 폐기   | 2021.12.03. |
| 70  | 도근점 | 9240 | 지역   | 153822.31 | 289813.64 | 창선면 서대리 728-2   | 폐기   | 2021.12.03. |
| 71  | 도근점 | 9241 | 지역   | 153650.38 | 289951.83 | 창선면 서대리 672     | 폐기   | 2021.12.03. |
| 72  | 도근점 | 9242 | 지역   | 153514.45 | 290148.37 | 창선면 서대리 216-3   | 폐기   | 2021.12.03. |
| 73  | 도근점 | 9243 | 지역   | 153166.9  | 290640.5  | 창선면 서대리 산 120-3 | 폐기   | 2021.12.03. |
| 74  | 도근점 | 9244 | 지역   | 153137.65 | 290722.6  | 창선면 서대리 산 120-4 | 폐기   | 2021.12.03. |
| 75  | 도근점 | 9245 | 지역   | 153100.2  | 290734.26 | 창선면 동대리 1019-2  | 폐기   | 2021.12.03. |
| 76  | 도근점 | 9246 | 지역   | 153077.32 | 290755.06 | 창선면 동대리 1019-1  | 폐기   | 2021.12.03. |
| 77  | 도근점 | 9247 | 지역   | 153037.22 | 290800.44 | 창선면 동대리 1021    | 폐기   | 2021.12.03. |
| 78  | 도근점 | 9250 | 지역   | 149715.23 | 289433.38 | 창선면 지족리 755-2   | 폐기   | 2021.12.03. |
| 79  | 도근점 | 9252 | 지역   | 149836.99 | 289283.38 | 창선면 지족리 792-5   | 폐기   | 2021.12.03. |
| 80  | 도근점 | 9253 | 지역   | 149893.5  | 289198.01 | 창선면 지족리 764-3   | 폐기   | 2021.12.03. |
| 81  | 도근점 | 9256 | 지역   | 150175.52 | 289028.92 | 창선면 지족리 821-5   | 폐기   | 2021.12.03. |
| 82  | 도근점 | 9257 | 지역   | 150283.07 | 288940.94 | 창선면 지족리 834-3   | 폐기   | 2021.12.03. |
| 83  | 도근점 | 9259 | 지역   | 150512.31 | 288786.04 | 창선면 광천리 242-3   | 폐기   | 2021.12.03. |
| 84  | 도근점 | 9260 | 지역   | 150592.16 | 288669.65 | 창선면 광천리 291-1   | 폐기   | 2021.12.03. |
| 85  | 도근점 | 9261 | 지역   | 150648.75 | 288562.63 | 창선면 광천리 275-4   | 폐기   | 2021.12.03. |
| 86  | 도근점 | 9262 | 지역   | 150780.81 | 288475.89 | 창선면 광천리 1006    | 폐기   | 2021.12.03. |
| 87  | 도근점 | 9263 | 지역   | 150874.07 | 288385.73 | 창선면 광천리 337-4   | 폐기   | 2021.12.03. |
| 88  | 도근점 | 9264 | 지역   | 150972.69 | 288298.02 | 창선면 광천리 400-3   | 폐기   | 2021.12.03. |
| 89  | 도근점 | 9265 | 지역   | 151073.54 | 288222.58 | 창선면 광천리 429-2   | 폐기   | 2021.12.03. |
| 90  | 도근점 | 9266 | 지역   | 151194.93 | 288154.65 | 창선면 광천리 548-6   | 폐기   | 2021.12.03. |
| 91  | 도근점 | 9267 | 지역   | 151332.77 | 288170.96 | 창선면 광천리 548-6   | 폐기   | 2021.12.03. |
| 92  | 도근점 | 9268 | 지역   | 151399.17 | 288186.18 | 창선면 광천리 548-6   | 폐기   | 2021.12.03. |
| 93  | 도근점 | 9270 | 지역   | 151696.49 | 288179.14 | 창선면 광천리 584-10  | 폐기   | 2021.12.03. |
| 94  | 도근점 | 9272 | 지역   | 151909.65 | 288020.3  | 창선면 광천리 932-3   | 폐기   | 2021.12.03. |
| 95  | 도근점 | 9273 | 지역   | 152048.25 | 287961.94 | 창선면 광천리 산75-1   | 폐기   | 2021.12.03. |
| 96  | 도근점 | 9274 | 지역   | 152166.78 | 287988.18 | 창선면 광천리 산75-1   | 폐기   | 2021.12.03. |
| 97  | 도근점 | 9276 | 지역   | 152327.33 | 288135.46 | 창선면 광천리 산55-3   | 폐기   | 2021.12.03. |
| 98  | 도근점 | 9277 | 지역   | 152444.11 | 288212.84 | 창선면 광천리 791-6   | 폐기   | 2021.12.03. |
| 99  | 도근점 | 9278 | 지역   | 152539.39 | 288267.84 | 창선면 광천리 808-2   | 폐기   | 2021.12.03. |
| 100 | 도근점 | 9281 | 지역   | 152879.7  | 288347.1  | 창선면 광천리 912-1   | 폐기   | 2021.12.03. |
| 101 | 도근점 | 9282 | 지역   | 150983.91 | 293264.05 | 창선면 수산리 405-1   | 폐기   | 2021.12.03. |
| 102 | 도근점 | 9292 | 지역   | 150677.77 | 293388.14 | 창선면 당저리 704     | 폐기   | 2021.12.03. |
| 103 | 도근점 | 9293 | 지역   | 150581.75 | 293401.05 | 창선면 부윤리 산54-8   | 폐기   | 2021.12.03. |
| 104 | 도근점 | 9294 | 지역   | 150423.77 | 293372.14 | 창선면 부윤리 679-2   | 폐기   | 2021.12.03. |
| 105 | 도근점 | 9295 | 지역   | 150434.17 | 293492.32 | 창선면 부윤리 679-2   | 폐기   | 2021.12.03. |
| 106 | 도근점 | 9296 | 지역   | 150219.17 | 293514.5  | 창선면 부윤리 산67-31  | 폐기   | 2021.12.03. |
| 107 | 도근점 | 9297 | 지역   | 150086.46 | 293430.48 | 창선면 부윤리 산67-31  | 폐기   | 2021.12.03. |
| 108 | 도근점 | 9298 | 지역   | 149975.86 | 293325.62 | 창선면 당저리 478-8   | 폐기   | 2021.12.03. |
| 109 | 도근점 | 9299 | 지역   | 149881.05 | 293320.03 | 창선면 당저리 478-8   | 폐기   | 2021.12.03. |
| 110 | 도근점 | 9300 | 지역   | 149889.91 | 293176.32 | 창선면 당저리 570-2   | 폐기   | 2021.12.03. |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111 | 도근점 | 9302 | 지역   | 150877.99 | 293220.06 | 창선면 수산리 435    | 폐기   | 2021.12.03. |
| 112 | 도근점 | 9303 | 지역   | 150784.94 | 293168.79 | 창선면 수산리 436    | 폐기   | 2021.12.03. |
| 113 | 도근점 | 9304 | 지역   | 150678.24 | 293149.17 | 창선면 당저리 51     | 폐기   | 2021.12.03. |
| 114 | 도근점 | 9305 | 지역   | 150625.42 | 293259.33 | 창선면 당저리 1      | 폐기   | 2021.12.03. |
| 115 | 도근점 | 9306 | 지역   | 150479.31 | 293187.55 | 창선면 당저리 39     | 폐기   | 2021.12.03. |
| 116 | 도근점 | 9307 | 지역   | 150367.36 | 293135.1  | 창선면 당저리 194-2  | 폐기   | 2021.12.03. |
| 117 | 도근점 | 9308 | 지역   | 150208.19 | 293129.93 | 창선면 당저리 217    | 폐기   | 2021.12.03. |
| 118 | 도근점 | 9309 | 지역   | 150312.73 | 293242.19 | 창선면 당저리 195-4  | 폐기   | 2021.12.03. |
| 119 | 도근점 | 9310 | 지역   | 150023.37 | 293086.12 | 창선면 당저리 219-4  | 폐기   | 2021.12.03. |
| 120 | 도근점 | 9312 | 지역   | 150390.01 | 293011.32 | 창선면 당저리 194-2  | 폐기   | 2021.12.03. |
| 121 | 도근점 | 9313 | 지역   | 150351.53 | 292971.12 | 창선면 당저리 194-8  | 폐기   | 2021.12.03. |
| 122 | 도근점 | 9314 | 지역   | 150294.35 | 292974.11 | 창선면 당저리 195-5  | 폐기   | 2021.12.03. |
| 123 | 도근점 | 9315 | 지역   | 150190.87 | 292952.73 | 창선면 당저리 217    | 폐기   | 2021.12.03. |
| 124 | 도근점 | 9317 | 지역   | 156897.99 | 293638.12 | 창선면 당항리 116    | 폐기   | 2021.12.03. |
| 125 | 도근점 | 9318 | 지역   | 156975.58 | 293684.48 | 창선면 당항리 107-8  | 폐기   | 2021.12.03. |
| 126 | 도근점 | 9319 | 지역   | 156971.77 | 293842.75 | 창선면 당항리 175-4  | 폐기   | 2021.12.03. |
| 127 | 도근점 | 9320 | 지역   | 151649.12 | 292444.46 | 창선면 상죽리 300-1  | 폐기   | 2021.12.03. |
| 128 | 도근점 | 9321 | 지역   | 151955.1  | 292207.96 | 창선면 상신리 214-5  | 폐기   | 2021.12.03. |
| 129 | 도근점 | 9322 | 지역   | 152063.52 | 291223.92 | 창선면 상신리 산 29   | 폐기   | 2021.12.03. |
| 130 | 도근점 | 9323 | 지역   | 152037.43 | 291219.06 | 창선면 상신리 산 29   | 폐기   | 2021.12.03. |
| 131 | 도근점 | 9324 | 지역   | 152055.8  | 291131.91 | 창선면 옥천리 산 37   | 폐기   | 2021.12.03. |
| 132 | 도근점 | 9325 | 지역   | 152070.84 | 291080.74 | 창선면 옥천리 산 37   | 폐기   | 2021.12.03. |
| 133 | 도근점 | 9326 | 지역   | 152100.89 | 291052.8  | 창선면 옥천리 산 37   | 폐기   | 2021.12.03. |
| 134 | 도근점 | 9327 | 지역   | 152165.76 | 291043.57 | 창선면 옥천리 산 37   | 폐기   | 2021.12.03. |
| 135 | 도근점 | 9328 | 지역   | 152169.19 | 290978.44 | 창선면 옥천리 산 40   | 폐기   | 2021.12.03. |
| 136 | 도근점 | 9329 | 지역   | 152251.33 | 290930.26 | 창선면 옥천리 산 45   | 폐기   | 2021.12.03. |
| 137 | 도근점 | 9330 | 지역   | 152294.71 | 290889.28 | 창선면 옥천리 산 45   | 폐기   | 2021.12.03. |
| 138 | 도근점 | 9331 | 지역   | 152329.13 | 290877.52 | 창선면 옥천리 산 45   | 폐기   | 2021.12.03. |
| 139 | 도근점 | 9332 | 지역   | 152470.7  | 290621.07 | 창선면 옥천리 산 54-1 | 폐기   | 2021.12.03. |
| 140 | 도근점 | 9333 | 지역   | 152466.93 | 290459.69 | 창선면 옥천리 산 54   | 폐기   | 2021.12.03. |
| 141 | 도근점 | 9334 | 지역   | 152486.13 | 290399.45 | 창선면 옥천리 산 54   | 폐기   | 2021.12.03. |
| 142 | 도근점 | 9335 | 지역   | 152534.19 | 290169.16 | 창선면 옥천리 1062   | 폐기   | 2021.12.03. |
| 143 | 도근점 | 9336 | 지역   | 152390.44 | 290600.62 | 창선면 옥천리 산 78-1 | 폐기   | 2021.12.03. |
| 144 | 도근점 | 9337 | 지역   | 152308.59 | 290784.47 | 창선면 옥천리 1014-2 | 폐기   | 2021.12.03. |
| 145 | 도근점 | 9338 | 지역   | 152097.16 | 290837.16 | 창선면 옥천리 993-5  | 폐기   | 2021.12.03. |
| 146 | 도근점 | 9339 | 지역   | 151926.61 | 290963.23 | 창선면 옥천리967-1   | 폐기   | 2021.12.03. |
| 147 | 도근점 | 9344 | 지역   | 155219.64 | 292479.17 | 창선면 당항리 673-1  | 폐기   | 2021.12.03. |
| 148 | 도근점 | 9345 | 지역   | 152482.57 | 292261.27 | 창선면 상신리 427    | 폐기   | 2021.12.03. |
| 149 | 도근점 | 9346 | 지역   | 152680.8  | 292230.51 | 창선면 동대리 547    | 폐기   | 2021.12.03. |
| 150 | 도근점 | 9347 | 지역   | 152838.12 | 292264.22 | 창선면 동대리 486-5  | 폐기   | 2021.12.03. |
| 151 | 도근점 | 9349 | 지역   | 153098.33 | 292187.2  | 창선면 동대리482-4   | 폐기   | 2021.12.03. |
| 152 | 도근점 | 9350 | 지역   | 153257.56 | 292231.63 | 창선면 동대리460     | 폐기   | 2021.12.03. |
| 153 | 도근점 | 9354 | 지역   | 153888.8  | 292424.29 | 창선면 동대리 358-1  | 폐기   | 2021.12.03. |
| 154 | 도근점 | 9360 | 지역   | 154615.8  | 292738.69 | 창선면 동대리 174-7  | 폐기   | 2021.12.03. |
| 155 | 도근점 | 9361 | 지역   | 154729.46 | 292673.21 | 창선면 동대리 150    | 폐기   | 2021.12.03. |
| 156 | 도근점 | 9363 | 지역   | 154958.85 | 292440.55 | 창선면 동대리43-3    | 폐기   | 2021.12.03. |
| 157 | 도근점 | 9365 | 지역   | 151024.35 | 294219.79 | 창선면 부윤리 767    | 폐기   | 2021.12.03. |
| 158 | 도근점 | 9366 | 지역   | 150950.73 | 294284.23 | 창선면 부윤리 768    | 폐기   | 2021.12.03. |
| 159 | 도근점 | 9367 | 지역   | 150840.95 | 294345.67 | 창선면 부윤리 770    | 폐기   | 2021.12.03. |
| 160 | 도근점 | 9374 | 지역   | 150722.62 | 294393.28 | 창선면 부윤리 772    | 폐기   | 2021.12.03. |
| 161 | 도근점 | 9376 | 지역   | 150559.85 | 294610.59 | 창선면 부윤리 773    | 폐기   | 2021.12.03. |
| 162 | 도근점 | 9377 | 지역   | 150551.95 | 294676.09 | 창선면 부윤리 773    | 폐기   | 2021.12.03. |
| 163 | 도근점 | 9378 | 지역   | 150521.75 | 294864.87 | 창선면 부윤리 188    | 폐기   | 2021.12.03. |
| 164 | 도근점 | 9379 | 지역   | 150879.39 | 294263.16 | 창선면 부윤리 746    | 폐기   | 2021.12.03. |
| 165 | 도근점 | 9380 | 지역   | 150747.64 | 294319.57 | 창선면 부윤리 776    | 폐기   | 2021.12.03. |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166 | 도근점 | 9382  | 지역   | 150539.3   | 294545     | 창선면 부윤리 763      | 폐기   | 2021.12.03. |
| 167 | 도근점 | 9383  | 지역   | 150493.67  | 294693.74  | 창선면 부윤리 774      | 폐기   | 2021.12.03. |
| 168 | 도근점 | 9384  | 지역   | 150208.5   | 293825.32  | 창선면 부윤리 산 67-32  | 폐기   | 2021.12.03. |
| 169 | 도근점 | 9389  | 지역   | 150044.16  | 294635.47  | 창선면 부윤리 106      | 폐기   | 2021.12.03. |
| 170 | 도근점 | 9391  | 지역   | 150054.6   | 294787.4   | 창선면 부윤리 127-1    | 폐기   | 2021.12.03. |
| 171 | 도근점 | 9392  | 지역   | 150407.19  | 295004.87  | 창선면 부윤리 산 28-1   | 폐기   | 2021.12.03. |
| 172 | 도근점 | 9393  | 지역   | 150596.83  | 294953.18  | 창선면 부윤리 183-3    | 폐기   | 2021.12.03. |
| 173 | 도근점 | 9396  | 지역   | 150444.69  | 294222.55  | 창선면 부윤리 318      | 폐기   | 2021.12.03. |
| 174 | 도근점 | 9397  | 지역   | 150398.89  | 294281.44  | 창선면 부윤리 산 79-3   | 폐기   | 2021.12.03. |
| 175 | 도근점 | 9399  | 지역   | 150278.32  | 294387.93  | 창선면 부윤리 345      | 폐기   | 2021.12.03. |
| 176 | 도근점 | 9403  | 지역   | 150137.63  | 294071.46  | 창선면 부윤리 330-15   | 폐기   | 2021.12.03. |
| 177 | 도근점 | 9404  | 지역   | 149936.32  | 294744.02  | 창선면 부윤리 825      | 폐기   | 2021.12.03. |
| 178 | 도근점 | 9405  | 지역   | 149918.7   | 294816.72  | 창선면 부윤리 40-1     | 폐기   | 2021.12.03. |
| 179 | 도근점 | 9422  | 지역   | 150553.64  | 295936.03  | 창선면 진동리 379-1    | 폐기   | 2021.12.03. |
| 180 | 도근점 | 9428  | 지역   | 149536.12  | 296621.64  | 창선면 진동리 296-5    | 폐기   | 2021.12.03. |
| 181 | 도근점 | 9429  | 지역   | 149655.05  | 296425.04  | 창선면 진동리 산 235-1  | 폐기   | 2021.12.03. |
| 182 | 도근점 | 9430  | 지역   | 149640.59  | 296210.24  | 창선면 진동리 산 235-23 | 폐기   | 2021.12.03. |
| 183 | 도근점 | 9431  | 지역   | 149487.09  | 296085.16  | 창선면 진동리 산 222-3  | 폐기   | 2021.12.03. |
| 184 | 도근점 | 9432  | 지역   | 149445.62  | 296011.49  | 창선면 진동리 산 223-3  | 폐기   | 2021.12.03. |
| 185 | 도근점 | 9433  | 지역   | 149316.68  | 295693.44  | 창선면 부윤리 산 144-3  | 폐기   | 2021.12.03. |
| 186 | 도근점 | 9440  | 지역   | 149435.9   | 289766.15  | 창선면 지족리 523-5    | 폐기   | 2021.12.03. |
| 187 | 도근점 | 9441  | 지역   | 149549.95  | 289590.02  | 창선면 지족리 883      | 폐기   | 2021.12.03. |
| 188 | 도근점 | 9442  | 지역   | 149660.81  | 289474.02  | 창선면 지족리 883      | 폐기   | 2021.12.03. |
| 189 | 도근점 | 9443  | 지역   | 149812.43  | 289339.74  | 창선면 지족리 883      | 폐기   | 2021.12.03. |
| 190 | 도근점 | 9444  | 지역   | 149880.99  | 289209.15  | 창선면 지족리 883      | 폐기   | 2021.12.03. |
| 191 | 도근점 | 9445  | 지역   | 150013.89  | 289179.96  | 창선면 지족리 695-3    | 폐기   | 2021.12.03. |
| 192 | 도근점 | 9449  | 지역   | 150550.11  | 288768.68  | 창선면 광천리 244-1    | 폐기   | 2021.12.03. |
| 193 | 도근점 | 9450  | 지역   | 150646.35  | 288684.52  | 창선면 지족리 287      | 폐기   | 2021.12.03. |
| 194 | 도근점 | 9451  | 지역   | 150829.71  | 288410.02  | 창선면 광천리 339-3    | 폐기   | 2021.12.03. |
| 195 | 도근점 | 9475  | 지역   | 155417.15  | 290379.56  | 창선면 울도리 765-3    | 폐기   | 2021.12.03. |
| 196 | 도근점 | 9499  | 지역   | 150689.03  | 290317.63  | 창선면 옥천리 639      | 폐기   | 2021.12.03. |
| 197 | 도근점 | 9500  | 지역   | 150626.91  | 290409.89  | 창선면 옥천리 618      | 폐기   | 2021.12.03. |
| 198 | 도근점 | 9501  | 지역   | 150610.12  | 290473.77  | 창선면 옥천리 590-3    | 폐기   | 2021.12.03. |
| 199 | 도근점 | 9505  | 지역   | 154008.39  | 292364.8   | 창선면 동대리 273-1    | 폐기   | 2021.12.03. |
| 200 | 도근점 | 9506  | 지역   | 153882.97  | 292322.41  | 창선면 동대리 351-2    | 폐기   | 2021.12.03. |
| 201 | 도근점 | 9507  | 지역   | 153765.69  | 292287.21  | 창선면 동대리 343-6    | 폐기   | 2021.12.03. |
| 202 | 도근점 | 9508  | 지역   | 153663.07  | 292286.45  | 창선면 동대리 379-4    | 폐기   | 2021.12.03. |
| 203 | 도근점 | 9512  | 지역   | 151212.69  | 293341.36  | 창선면 부윤리 577-2    | 폐기   | 2021.12.03. |
| 204 | 도근점 | 9516  | 지역   | 155351.83  | 292477.47  | 창선면 당항리 678-7    | 폐기   | 2021.12.03. |
| 205 | 도근점 | 9536  | 지역   | 148762.53  | 291404.28  | 삼동면 지족리 291-19   | 폐기   | 2021.12.03. |
| 206 | 도근점 | 9567  | 지역   | 152103.03  | 287961     | 창선면 광천리 산 66-2   | 폐기   | 2021.12.03. |
| 207 | 도근점 | 9568  | 지역   | 152170.06  | 288008.16  | 창선면 광천리 1021     | 폐기   | 2021.12.03. |
| 208 | 도근점 | 9569  | 지역   | 152307.63  | 288100.56  | 창선면 광천리 산 60-8   | 폐기   | 2021.12.03. |
| 209 | 도근점 | 9595  | 지역   | 153639.43  | 289951.56  | 창선면 서대리 672      | 폐기   | 2021.12.03. |
| 210 | 도근점 | 9601  | 지역   | 152704.87  | 292031.56  | 창선면 동대리 670-4    | 폐기   | 2021.12.03. |
| 211 | 도근점 | 9629  | 지역   | 151202.18  | 292718.92  | 창선면 수산리 256-2    | 폐기   | 2021.12.03. |
| 212 | 도근점 | 9633  | 지역   | 152720.46  | 291895.47  | 창선면 동대리 663-7    | 폐기   | 2021.12.03. |
| 213 | 도근점 | 9634  | 지역   | 152693.11  | 291933.28  | 창선면 동대리 664-1    | 폐기   | 2021.12.03. |
| 214 | 도근점 | 9635  | 지역   | 152658.94  | 291981.23  | 창선면 동대리 666-2    | 폐기   | 2021.12.03. |
| 215 | 도근점 | 9648  | 지역   | 152795.66  | 292064.57  | 창선면 동대리 499-1    | 폐기   | 2021.12.03. |
| 216 | 도근점 | 9681  | 지역   | 155612.87  | 291628.1   | 창선면 울도리 59-2     | 폐기   | 2021.12.03. |
| 217 | 도근점 | 9688  | 지역   | 155944.51  | 290759.2   | 창선면 울도리 553-4    | 폐기   | 2021.12.03. |
| 218 | 도근점 | 9689  | 지역   | 156067.71  | 290796.08  | 창선면 울도리 913      | 폐기   | 2021.12.03. |
| 219 | 도근점 | 9690  | 지역   | 156133.51  | 290686.85  | 창선면 울도리 491-5    | 폐기   | 2021.12.03. |
| 220 | 도근점 | 19311 | 세계   | 250940.994 | 297221.654 | 창선면 진동리 679      | 폐기   | 2021.12.03. |

# 남 해 군 공 보

(64) 제 708 호

2021년 12월 13일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221 | 도근점 | 19312 | 세계   | 250945.23  | 297159.611 | 창선면 진동리 682    | 폐기   | 2021.12.03. |
| 222 | 도근점 | 19313 | 세계   | 250925.485 | 297106.654 | 창선면 진동리 653    | 폐기   | 2021.12.03. |
| 223 | 도근점 | 19314 | 세계   | 250923.318 | 297018.582 | 창선면 진동리 641    | 폐기   | 2021.12.03. |
| 224 | 도근점 | 19315 | 세계   | 250918.106 | 296971.822 | 창선면 진동리 641    | 폐기   | 2021.12.03. |
| 225 | 도근점 | 19316 | 세계   | 250871.33  | 296942.138 | 창선면 진동리 644-2  | 폐기   | 2021.12.03. |
| 226 | 도근점 | 19317 | 세계   | 250722.183 | 296942.307 | 창선면 진동리 685    | 폐기   | 2021.12.03. |
| 227 | 도근점 | 19318 | 세계   | 250823.801 | 297017.941 | 창선면 진동리 649    | 폐기   | 2021.12.03. |
| 228 | 도근점 | 19319 | 세계   | 250821.394 | 297170.243 | 창선면 진동리 670    | 폐기   | 2021.12.03. |
| 229 | 도근점 | 19320 | 세계   | 250812.365 | 297249.772 | 창선면 진동리 671-1  | 폐기   | 2021.12.03. |
| 230 | 도근점 | 3001  | 지역   | 148626.71  | 291405.41  | 삼동면 지족리 291-7  | 폐기   | 2021.12.03. |
| 231 | 도근점 | 3002  | 지역   | 148560.95  | 291408.95  | 삼동면 지족리 282-9  | 폐기   | 2021.12.03. |
| 232 | 도근점 | 3004  | 지역   | 148552.73  | 291479.98  | 삼동면 지족리 388-2  | 폐기   | 2021.12.03. |
| 233 | 도근점 | 3005  | 지역   | 148579.94  | 291529.29  | 삼동면 지족리 236-1  | 폐기   | 2021.12.03. |
| 234 | 도근점 | 3008  | 지역   | 148572.94  | 291681.26  | 삼동면 지족리228-2   | 폐기   | 2021.12.03. |
| 235 | 도근점 | 3011  | 지역   | 148467.88  | 291527.97  | 삼동면 지족리256     | 폐기   | 2021.12.03. |
| 236 | 도근점 | 3012  | 지역   | 148373.09  | 291504.96  | 삼동면 지족리171     | 폐기   | 2021.12.03. |
| 237 | 도근점 | 3013  | 지역   | 148363.09  | 291547.41  | 삼동면 지족리173     | 폐기   | 2021.12.03. |
| 238 | 도근점 | 3014  | 지역   | 148459.23  | 291621.14  | 삼동면 지족리202-1   | 폐기   | 2021.12.03. |
| 239 | 도근점 | 3015  | 지역   | 148483.08  | 291619.78  | 삼동면 지족리241     | 폐기   | 2021.12.03. |
| 240 | 도근점 | 3018  | 지역   | 144718.73  | 296818.52  | 삼동면 물건리 1-5    | 폐기   | 2021.12.03. |
| 241 | 도근점 | 3019  | 지역   | 144836.62  | 296905.58  | 삼동면 물건리 1-5    | 폐기   | 2021.12.03. |
| 242 | 도근점 | 3020  | 지역   | 145044.85  | 297048.26  | 삼동면 물건리 1-5    | 폐기   | 2021.12.03. |
| 243 | 도근점 | 3021  | 지역   | 145115.83  | 296200.68  | 삼동면 물건리 39-3   | 폐기   | 2021.12.03. |
| 244 | 도근점 | 3022  | 지역   | 144838.58  | 296090.79  | 삼동면 물건리 39-3   | 폐기   | 2021.12.03. |
| 245 | 도근점 | 3023  | 지역   | 144732.23  | 296074.58  | 삼동면 물건리 39-3   | 폐기   | 2021.12.03. |
| 246 | 도근점 | 3024  | 지역   | 144599.08  | 296070.39  | 삼동면 물건리 481-3  | 폐기   | 2021.12.03. |
| 247 | 도근점 | 3025  | 지역   | 144489.37  | 296094.02  | 삼동면 물건리 484-3  | 폐기   | 2021.12.03. |
| 248 | 도근점 | 3026  | 지역   | 148359.66  | 293807.58  | 삼동면 금송리 210-2  | 폐기   | 2021.12.03. |
| 249 | 도근점 | 3027  | 지역   | 148278.43  | 294104.8   | 삼동면 금송리 114-15 | 폐기   | 2021.12.03. |
| 250 | 도근점 | 3033  | 지역   | 145215.1   | 294635.16  | 삼동면 봉화리 2158   | 폐기   | 2021.12.03. |
| 251 | 도근점 | 3034  | 지역   | 145182.51  | 294689.07  | 삼동면 봉화리 5611   | 폐기   | 2021.12.03. |
| 252 | 도근점 | 3035  | 지역   | 145192.9   | 294761.37  | 삼동면 봉화리2159    | 폐기   | 2021.12.03. |
| 253 | 도근점 | 3037  | 지역   | 145243.02  | 294959.84  | 삼동면 봉화리1155    | 폐기   | 2021.12.03. |
| 254 | 도근점 | 3038  | 지역   | 144367.72  | 295801.17  | 삼동면 물건리 412-3  | 폐기   | 2021.12.03. |
| 255 | 도근점 | 3039  | 지역   | 144083.03  | 296157.04  | 삼동면 물건리556-3   | 폐기   | 2021.12.03. |
| 256 | 도근점 | 3041  | 지역   | 148486.83  | 290419.76  | 삼동면 지족리 1105-3 | 폐기   | 2021.12.03. |
| 257 | 도근점 | 3042  | 지역   | 148560.87  | 290446.84  | 삼동면 지족리 1102   | 폐기   | 2021.12.03. |
| 258 | 도근점 | 3055  | 지역   | 147999.63  | 289627.04  | 삼동면 영지리 1732-1 | 폐기   | 2021.12.03. |
| 259 | 도근점 | 3056  | 지역   | 147938.75  | 289746.28  | 삼동면 영지리 1734-6 | 폐기   | 2021.12.03. |
| 260 | 도근점 | 3057  | 지역   | 148019.2   | 289868.65  | 삼동면 영지리1798    | 폐기   | 2021.12.03. |
| 261 | 도근점 | 3058  | 지역   | 148155.53  | 289939.05  | 삼동면 영지리 1734-6 | 폐기   | 2021.12.03. |
| 262 | 도근점 | 3059  | 지역   | 148279.1   | 289996.99  | 삼동면 지족리 1154-3 | 폐기   | 2021.12.03. |
| 263 | 도근점 | 3060  | 지역   | 148323.66  | 290120.36  | 삼동면 지족리 1155-1 | 폐기   | 2021.12.03. |
| 264 | 도근점 | 3062  | 지역   | 148404.15  | 290368.23  | 삼동면 지족리 1118-2 | 폐기   | 2021.12.03. |
| 265 | 도근점 | 3063  | 지역   | 148582.32  | 290594.85  | 삼동면 지족리 1086   | 폐기   | 2021.12.03. |
| 266 | 도근점 | 3067  | 지역   | 148626.71  | 291405.41  | 삼동면 지족리 291-7  | 폐기   | 2021.12.03. |
| 267 | 도근점 | 3069  | 지역   | 146538.1   | 287775.6   | 삼동면 영지리 2951   | 폐기   | 2021.12.03. |
| 268 | 도근점 | 3070  | 지역   | 147690.95  | 295492.87  | 삼동면 동천리 388-1  | 폐기   | 2021.12.03. |
| 269 | 도근점 | 3071  | 지역   | 147824.33  | 295737.11  | 삼동면 지족리 359-3  | 폐기   | 2021.12.03. |
| 270 | 도근점 | 3072  | 지역   | 148162.34  | 295924.08  | 삼동면 동천리 329-4  | 폐기   | 2021.12.03. |
| 271 | 도근점 | 3073  | 지역   | 148024.99  | 295942.68  | 삼동면 동천리 1514-3 | 폐기   | 2021.12.03. |
| 272 | 도근점 | 3074  | 지역   | 146399.97  | 287907.91  | 삼동면 영지리 2961   | 폐기   | 2021.12.03. |
| 273 | 도근점 | 3078  | 지역   | 148270.67  | 292398.65  | 삼동면 금송리 675    | 폐기   | 2021.12.03. |
| 274 | 도근점 | 3080  | 지역   | 148191.49  | 292596.99  | 삼동면 금송리 920    | 폐기   | 2021.12.03. |
| 275 | 도근점 | 3081  | 지역   | 148163.14  | 292523.71  | 삼동면 금송리 909-9  | 폐기   | 2021.12.03. |

| 연번  | 종류  | 기준점명 | 좌표구분 | X좌표       | Y좌표       | 상세주소            | 설치구분 | 폐기일자        |
|-----|-----|------|------|-----------|-----------|-----------------|------|-------------|
| 276 | 도근점 | 3082 | 지역   | 148094.86 | 292553.59 | 삼동면 금송리 938     | 폐기   | 2021.12.03. |
| 277 | 도근점 | 3084 | 지역   | 147927.84 | 292462.61 | 삼동면 금송리979-13   | 폐기   | 2021.12.03. |
| 278 | 도근점 | 3085 | 지역   | 147829.36 | 292425.01 | 삼동면 금송리 979-24  | 폐기   | 2021.12.03. |
| 279 | 도근점 | 3086 | 지역   | 147810.31 | 292496.12 | 삼동면 금송리 979-25  | 폐기   | 2021.12.03. |
| 280 | 도근점 | 3087 | 지역   | 147488.42 | 292473.81 | 삼동면 금송리 1009-4  | 폐기   | 2021.12.03. |
| 281 | 도근점 | 3088 | 지역   | 147486.38 | 292552.65 | 삼동면 금송리 1008-3  | 폐기   | 2021.12.03. |
| 282 | 도근점 | 3089 | 지역   | 147412.94 | 292526.98 | 삼동면 금송리 1012    | 폐기   | 2021.12.03. |
| 283 | 도근점 | 3090 | 지역   | 147350.12 | 292568.01 | 삼동면 금송리 1025-3  | 폐기   | 2021.12.03. |
| 284 | 도근점 | 3091 | 지역   | 147287.13 | 292636.44 | 삼동면 금송리 1025-3  | 폐기   | 2021.12.03. |
| 285 | 도근점 | 3092 | 지역   | 147207.78 | 292643.8  | 삼동면 금송리 1028-1  | 폐기   | 2021.12.03. |
| 286 | 도근점 | 3093 | 지역   | 147236.4  | 292561.15 | 삼동면 금송리 1030-2  | 폐기   | 2021.12.03. |
| 287 | 도근점 | 3094 | 지역   | 147144.55 | 292573.22 | 삼동면 금송리 1030-10 | 폐기   | 2021.12.03. |
| 288 | 도근점 | 3095 | 지역   | 147027.84 | 292554.56 | 삼동면 금송리 1288-1  | 폐기   | 2021.12.03. |
| 289 | 도근점 | 3096 | 지역   | 146271.46 | 288176.47 | 삼동면 영지리 2963-2  | 폐기   | 2021.12.03. |
| 290 | 도근점 | 3107 | 지역   | 148195.85 | 292662.36 | 삼동면 금송리 920     | 폐기   | 2021.12.03. |
| 291 | 도근점 | 3108 | 지역   | 148074.22 | 292661.93 | 삼동면 금송리 973     | 폐기   | 2021.12.03. |
| 292 | 도근점 | 3109 | 지역   | 148012.75 | 292612    | 삼동면 금송리 977     | 폐기   | 2021.12.03. |
| 293 | 도근점 | 3110 | 지역   | 147918.85 | 292562.46 | 삼동면 금송리 979-9   | 폐기   | 2021.12.03. |
| 294 | 도근점 | 3112 | 지역   | 147708.35 | 292495.42 | 삼동면 금송리 1000    | 폐기   | 2021.12.03. |
| 295 | 도근점 | 3113 | 지역   | 147610.96 | 292551.39 | 삼동면 금송리 1005    | 폐기   | 2021.12.03. |
| 296 | 도근점 | 3114 | 지역   | 147527.87 | 292591.86 | 삼동면 금송리 1024    | 폐기   | 2021.12.03. |
| 297 | 도근점 | 3115 | 지역   | 147439.52 | 292635.94 | 삼동면 금송리 1025-4  | 폐기   | 2021.12.03. |
| 298 | 도근점 | 3117 | 지역   | 147326.41 | 292757.36 | 삼동면 금송리 1026-7  | 폐기   | 2021.12.03. |
| 299 | 도근점 | 3118 | 지역   | 147253.77 | 292713.6  | 삼동면 금송리 1028-5  | 폐기   | 2021.12.03. |
| 300 | 도근점 | 3119 | 지역   | 147206.65 | 292718.16 | 삼동면 금송리 1032    | 폐기   | 2021.12.03. |
| 301 | 도근점 | 3121 | 지역   | 147069.59 | 292697.8  | 삼동면 금송리 1285-1  | 폐기   | 2021.12.03. |
| 302 | 도근점 | 3122 | 지역   | 147089.55 | 292644.19 | 삼동면 금송리 1287-1  | 폐기   | 2021.12.03. |
| 303 | 도근점 | 3123 | 지역   | 147021.93 | 292648.03 | 삼동면 금송리 1287-6  | 폐기   | 2021.12.03. |
| 304 | 도근점 | 3129 | 지역   | 146720.37 | 288239.36 | 삼동면 영지리 2795    | 폐기   | 2021.12.03. |
| 305 | 도근점 | 3130 | 지역   | 146693.9  | 288098.43 | 삼동면 영지리 산460-1  | 폐기   | 2021.12.03. |
| 306 | 도근점 | 3131 | 지역   | 145525.8  | 293715.26 | 삼동면 봉화리 1052    | 폐기   | 2021.12.03. |
| 307 | 도근점 | 3133 | 지역   | 145552.99 | 293943.05 | 삼동면 봉화리 2260    | 폐기   | 2021.12.03. |
| 308 | 도근점 | 3135 | 지역   | 145538.56 | 294147.91 | 삼동면 봉화리 2271    | 폐기   | 2021.12.03. |
| 309 | 도근점 | 3136 | 지역   | 145442.03 | 293955.95 | 삼동면 봉화리 2323    | 폐기   | 2021.12.03. |
| 310 | 도근점 | 3139 | 지역   | 145300.05 | 293817.27 | 삼동면 봉화리 2287    | 폐기   | 2021.12.03. |
| 311 | 도근점 | 3141 | 지역   | 145383.36 | 293960.27 | 삼동면 봉화리 2272    | 폐기   | 2021.12.03. |
| 312 | 도근점 | 3144 | 지역   | 145143.86 | 293700.42 | 삼동면 봉화 2295     | 폐기   | 2021.12.03. |
| 313 | 도근점 | 3145 | 지역   | 144915.41 | 293698.75 | 삼동면 봉화리 2309    | 폐기   | 2021.12.03. |
| 314 | 도근점 | 3146 | 지역   | 145027.9  | 293757.87 | 삼동면 봉화리 2308    | 폐기   | 2021.12.03. |
| 315 | 도근점 | 3147 | 지역   | 145137.57 | 293775.52 | 삼동면 봉화리 2299    | 폐기   | 2021.12.03. |
| 316 | 도근점 | 3149 | 지역   | 145351.79 | 293741.34 | 삼동면 봉화리 2315    | 폐기   | 2021.12.03. |
| 317 | 도근점 | 3151 | 지역   | 145552.76 | 293040.19 | 삼동면 봉화리 806     | 폐기   | 2021.12.03. |
| 318 | 도근점 | 3153 | 지역   | 145545.04 | 293294.79 | 삼동면 봉화리 813-5   | 폐기   | 2021.12.03. |
| 319 | 도근점 | 3154 | 지역   | 145441.21 | 293315.02 | 삼동면 봉화리 813-5   | 폐기   | 2021.12.03. |
| 320 | 도근점 | 3160 | 지역   | 145484.06 | 292737.88 | 삼동면 봉화리 1185    | 폐기   | 2021.12.03. |
| 321 | 도근점 | 3165 | 지역   | 148373.27 | 290836.76 | 삼동면 지족리 870-9   | 폐기   | 2021.12.03. |
| 322 | 도근점 | 3167 | 지역   | 148343.69 | 290958.27 | 삼동면 지족리 870-5   | 폐기   | 2021.12.03.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36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양식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남해양식<br>제592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피조개 | 이동면<br>원천 | 50,000                        | 2021.10.08<br>2031.10.07<br>(10년) | 남해군 이동면<br>신전리       | 원천<br>어촌계 | 192호<br>재개발 |
| 남해양식<br>제593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새꼬막 | 이동면<br>초음 | 50,000                        | 2021.10.07<br>2031.10.06<br>(10년) | 남해군 삼동면<br>삼이로4번길 19 | 강철호       | 193호<br>재개발 |

※ '21/22년 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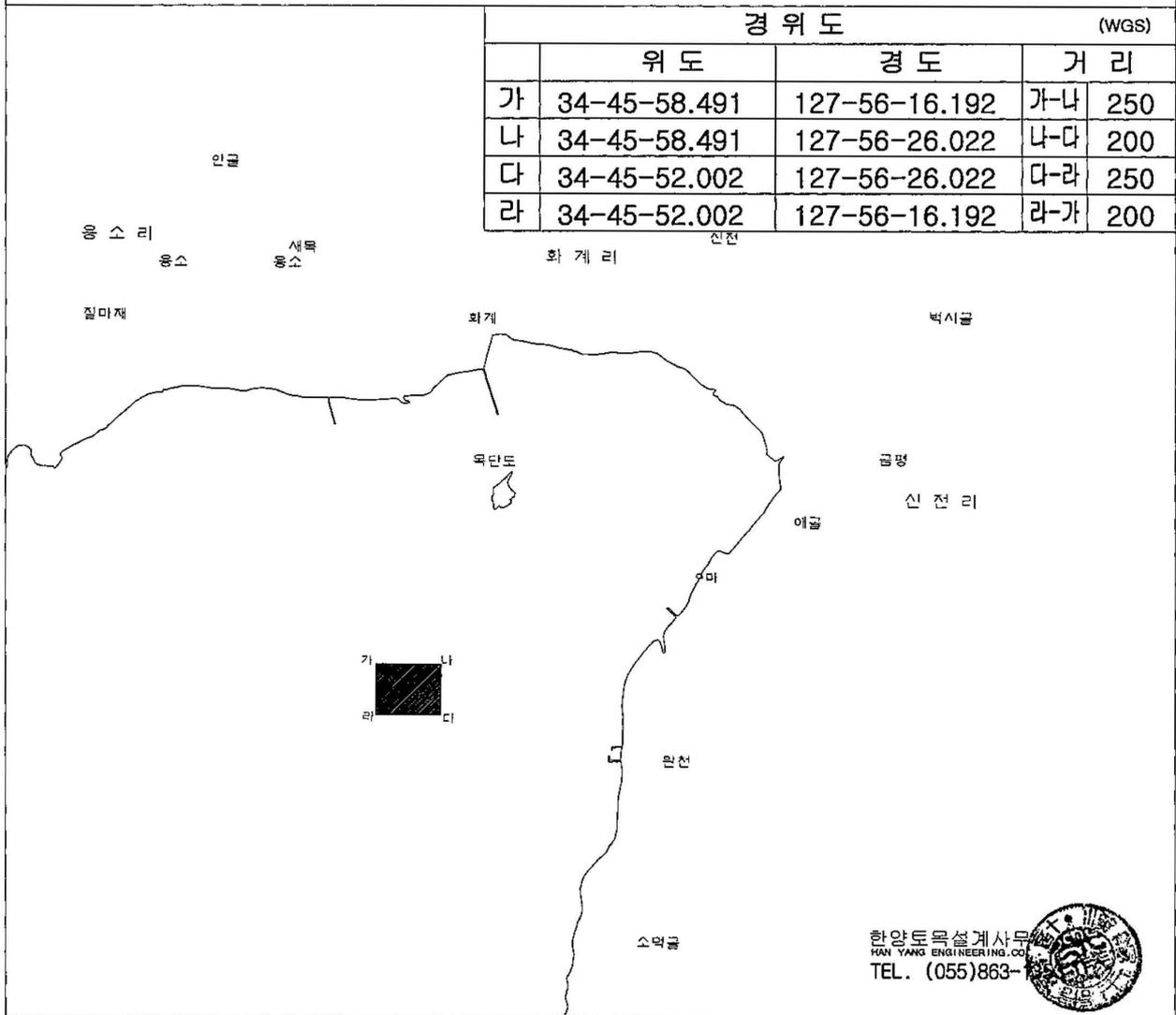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양식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br>제192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피조개 | 이동<br>원천 | 50,000                        | 2011.10.08<br>2021.10.07<br>(10년) | 남해군 이동면<br>신전리       | 원천<br>어촌계 |    |
| 남해양식<br>제193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새꼬막 | 이동<br>초음 | 50,000                        | 2011.10.07<br>2021.10.06<br>(10년) | 남해군 삼동면<br>삼이로4번길 19 | 강철호       |    |

# 592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6-10.39, E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한양토목설계사무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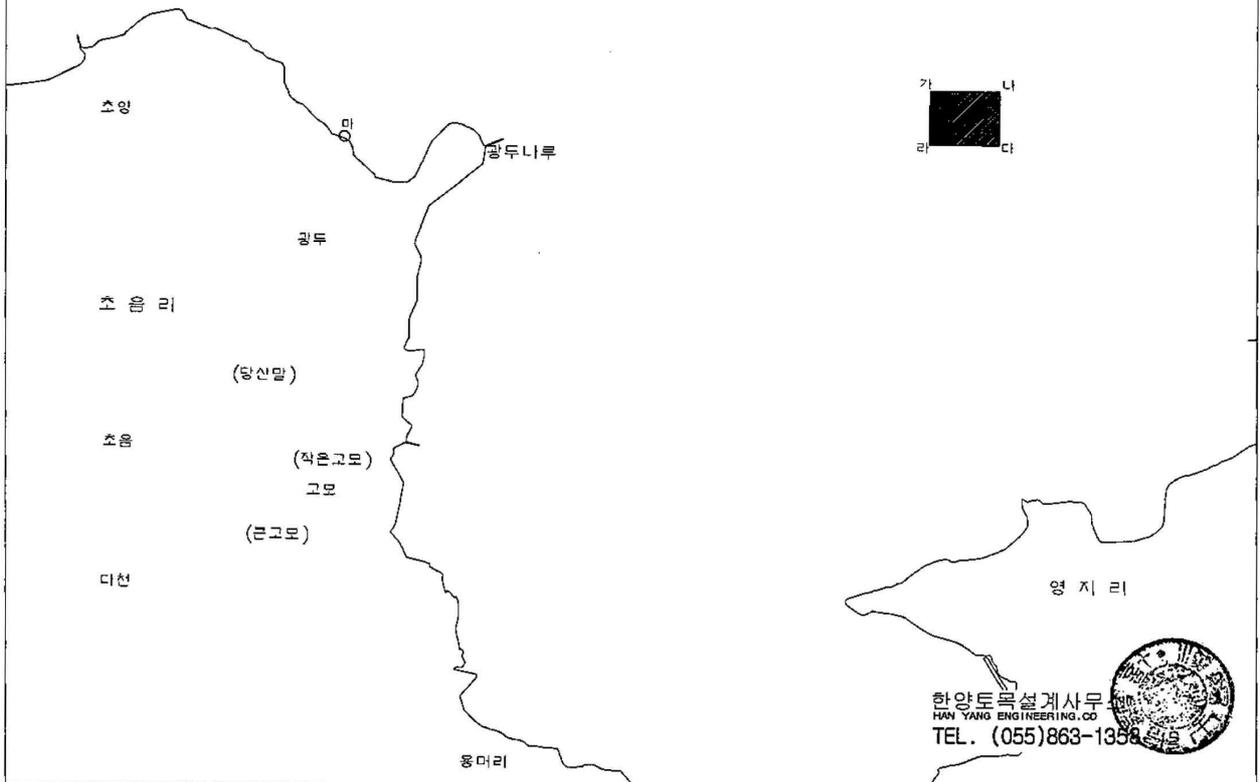
593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축척 :  $\frac{1}{25,000}$

- (마) N34-49-44.511, E127-56-19.97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 경 위 도 |              |               |     | (WGS) |
|-------|--------------|---------------|-----|-------|
|       | 위도           | 경도            | 거 리 |       |
| 가     | 34-49-50.864 | 127-57-42.762 | 가-나 | 100   |
| 나     | 34-49-50.864 | 127-57-52.600 | 나-다 | 100   |
| 다     | 34-49-44.374 | 127-57-52.600 | 다-라 | 100   |
| 라     | 34-49-44.374 | 127-57-42.762 | 라-가 | 100   |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8

남해군 공고 제2021-1608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양식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br>제594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피조개 | 이동<br>용소 | 50,000                        | 2021.12.08<br>2031.12.07<br>(10년) | 남해군 이동면<br>용소리      | 용소<br>어촌계 | 194호<br>재개발 |
| 남해양식<br>제595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새꼬막 | 고현<br>이어 | 50,000                        | 2021.12.08<br>2031.12.07<br>(10년) | 하동군 금성면<br>가린길 56-7 | 주명래       | 195호<br>재개발 |

※ '21/22년 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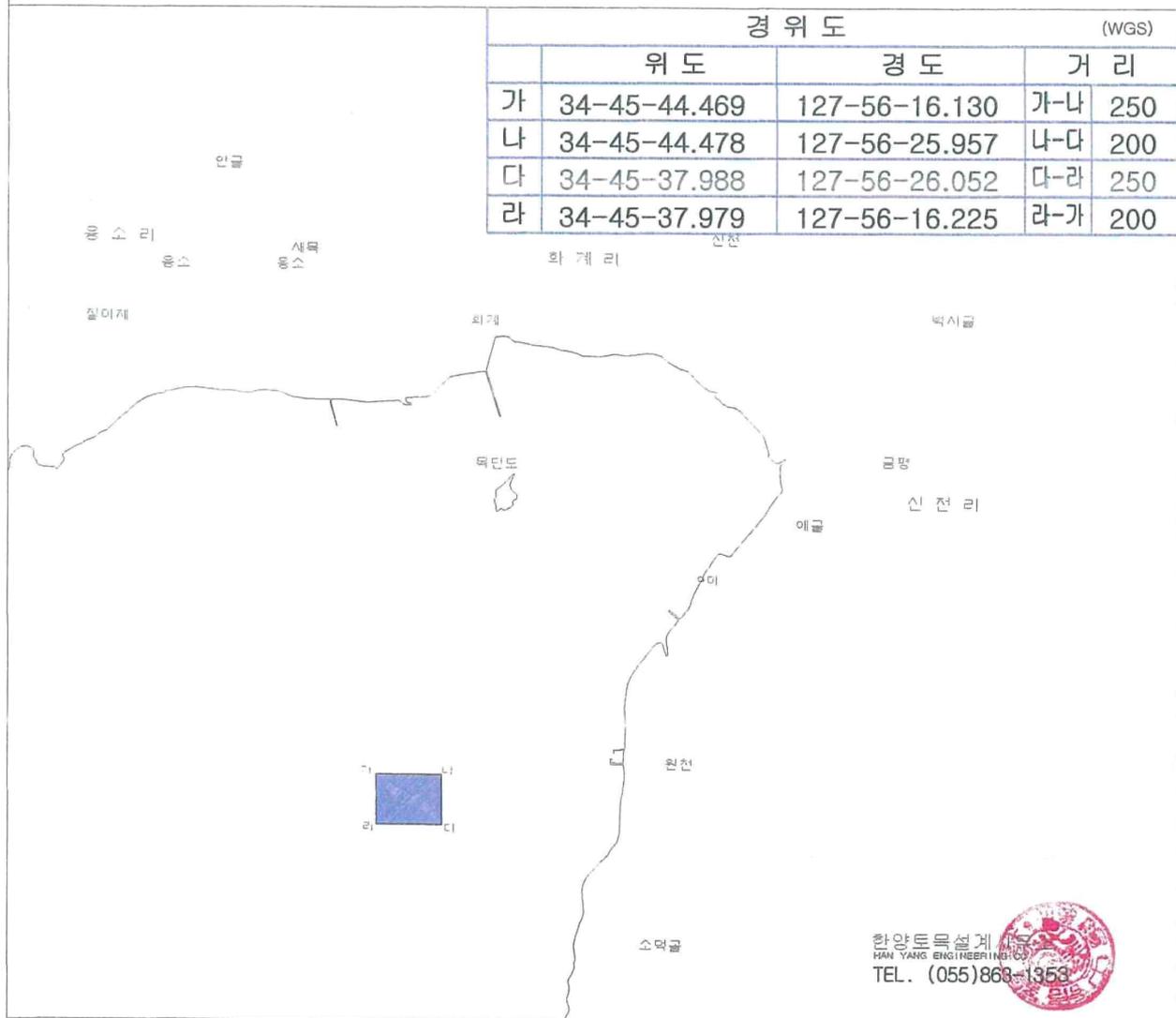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br>(어업방법) | 양식물 | 어장<br>위치 | 면허<br>면적<br>(m <sup>2</sup>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남해양식<br>제194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피조개 | 이동<br>용소 | 50,000                        | 2011.12.08<br>2021.12.07<br>(10년) | 남해군 이동면<br>용소리      | 용소<br>어촌계 |    |
| 남해양식<br>제195호 | 패류양식<br>(바닥식)   | 새꼬막 | 고현<br>이어 | 50,000                        | 2011.12.08<br>2021.12.07<br>(10년) | 하동군 금성면<br>가린길 56-7 | 주명래       |    |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4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46-10.39, E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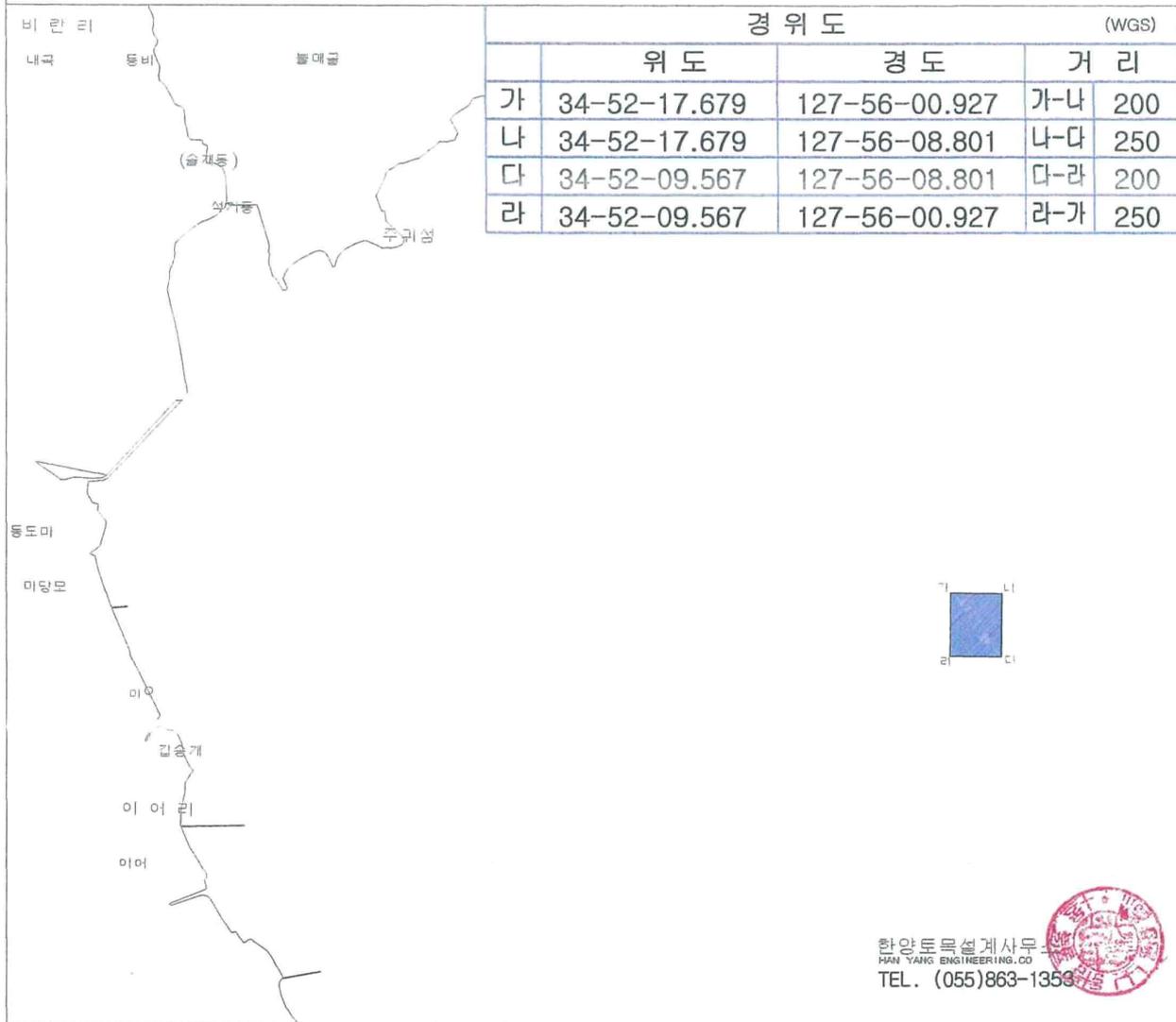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8-1353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52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2-03.78 E127-54-00.1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남해군 공고 제 2021-1633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 남 해 군 수

####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지정 하고자 함.

####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가. 행정예고 기간 : 2021. 12. 7. ~ 2021. 12. 28.(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1. 12. 7. ~ 2021. 12. 28.(21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산림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1. 12. 28. 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985)
- 라. 제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 마. 문의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 055)860-365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 지구명     | 위 치                 | 지정내용 |    |                     | 지정사유              | 비 고 |
|---------|---------------------|------|----|---------------------|-------------------|-----|
|         |                     | 유형   | 등급 | 면적(m <sup>2</sup> ) |                   |     |
| 남산공원1지구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 붕괴위험 | D  | 4,585               |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     |
| 남산공원2지구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 붕괴위험 | D  | 9,137               |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     |
| 남산공원3지구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 | 붕괴위험 | D  | 18,392              |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     |

5. 붕괴위험지역에서 행위 협의 사항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리군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지 구 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백만원) | 사업내용               |
|-------------|-------------------|-----------|--------------------|
| 남산공원1,2,3지구 | 2023년 ~ 2025년(예정) | 3,700     | 낙석방지시설 및 석축옹벽 등 1식 |

※ 사업시기 및 예산은 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br>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br>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br><br>(전화번호: )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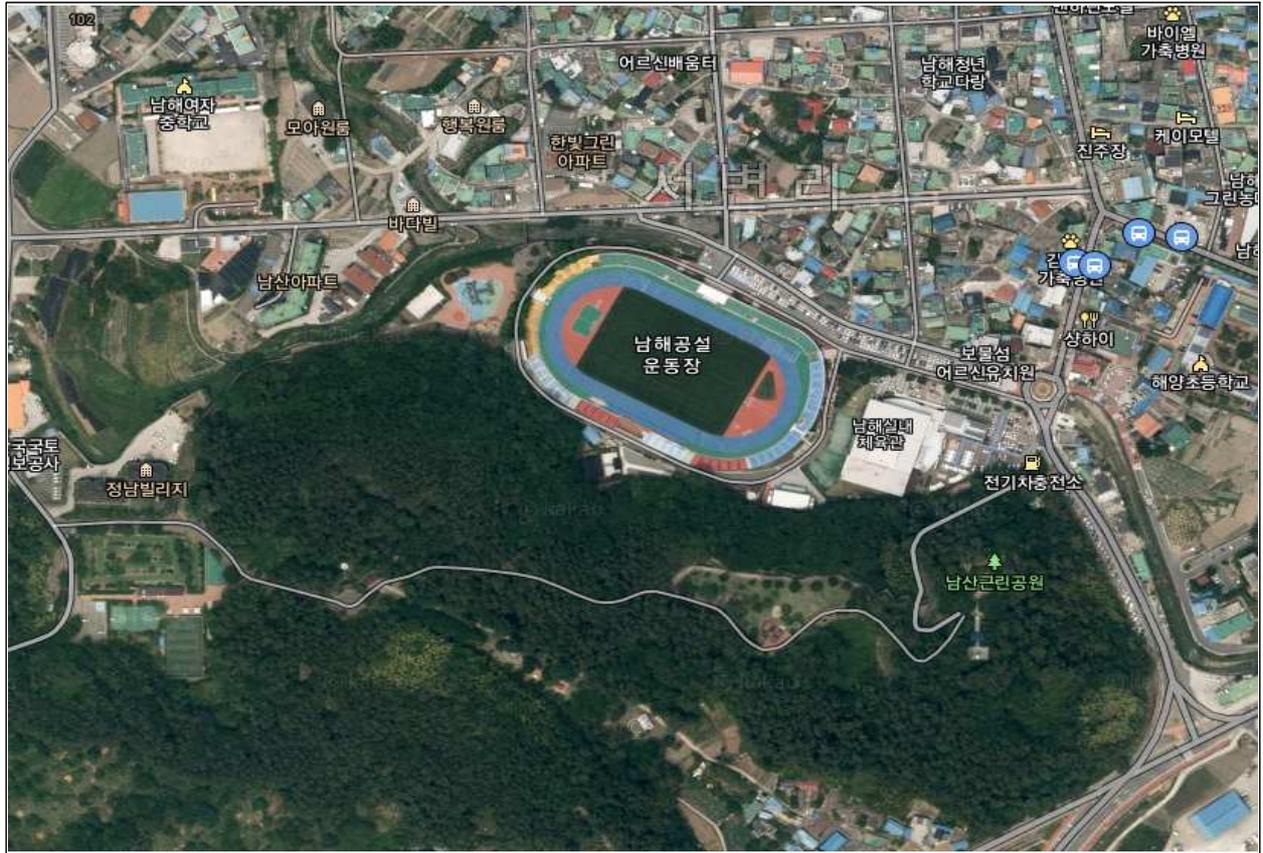
서귀포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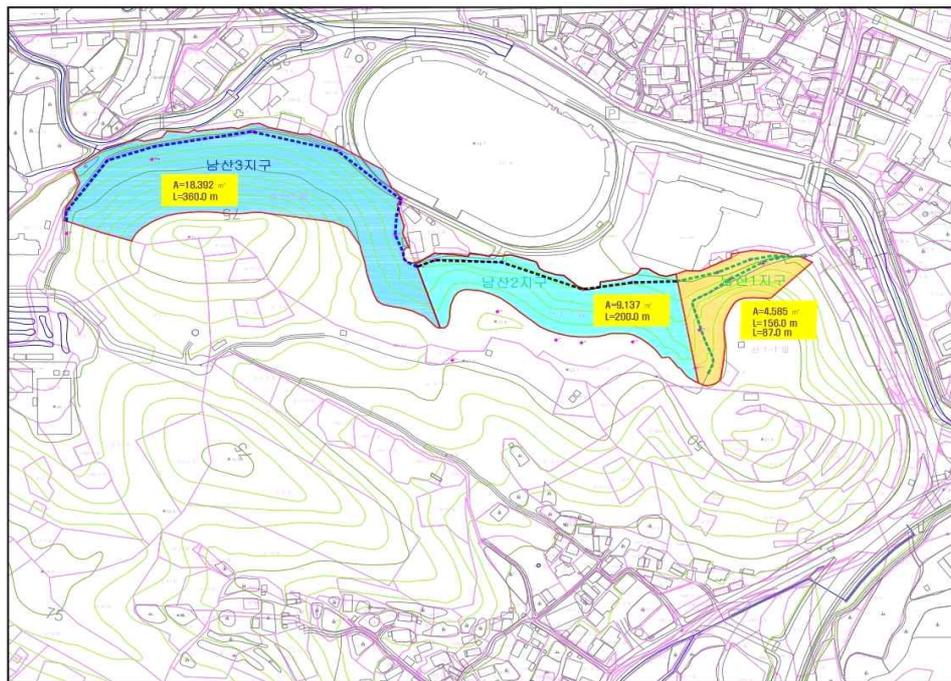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위치도 및 지형도면



남 산 지 구 1:1,200



남해군 공고 제2021-1634호

##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의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 남 해 군 수

####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나.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전역
- 다. 규 모 : 남해군 행정구역 전역 579.490km<sup>2</sup>
- 라. 시 행 자 : 남 해 군
- 마. 계획기간 : 목표연도 2025년

2. 계획의 목적

- 가. 남해군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제시
- 나.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군계획시설(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의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전체적인 군정 발전의 기틀 마련
- 다. 기존 관리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체계 수립

3. 공람사항

- 가.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1.12.10. ~ `21.12.24.까지(15일간)
- 나. 장 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도시건축과 및 읍·면사무소
- 다. 의견제출 내용 :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